

인천지방법원 2020. 12. 16 선고 2020나76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# 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0. 12. 16 선고 2020나766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0. 1. 22 선고 2019가소6112 판결

### 전 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0. 10. 28

판결 선고 2020. 12. 16

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9가소6112 판결

#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#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10, 985, 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당사자들의 주장

#### 가. 원고

피고는 임의로 원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0, 285, 740원을 소진하고, 2016 년 10월경 원고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은 700, 000원을 강취하여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였다.

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0, 985, 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#### 나. 피고

피고는 아들인 원고의 동의를 받고 마트에서 장 보거나 외식, 생활비 등으로 원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.

원고의 교통사고 합의금 700, 000원 중 400, 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교부하였을 뿐, 강취한 사실이 없다.

### 2. 판단

#### 가. 체크카드 사용 부분에 대한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오히려 갑제 2,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이 대부분 마트, 약국, 식당에서 사용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, 당시 피고가 원고의 보호자로서 함께 거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동의를 받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).

나. 교통사고 합의금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16 . 10. 19.

주식회사 C으로부터 700, 000원을 입금 받고, 2016 . 10. 20. 700, 00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, 000원을 강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신재환판사 송한도    판사 박정미